

대학원 전일제 학생 연구참여 및 학업 이행 협약서

□ 사업명: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지역 수요 중심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

□ 사업기간: 2023. 4. 1. - 2029. 12. 31.

연구책임자(이하 ‘갑’ 이라 함)와 대학원생(이하 ‘을’ 이라 함)은 연구실의 성실한 연구 환경 조성과 ‘을’의 성공적인 학위 취득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표)

본 협약은 ‘을’이 전일제(Full-time) 대학원생으로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고, ‘갑’은 이에 따른 연구 환경 조성 및 학생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호 간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.

제2조(‘을’의 의무 및 연구 참여)

- ① ‘을’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실의 연구 과제에 성실히 참여하며, 자신의 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업과 연구 활동을 최우선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연구실 운영 규정(출퇴근 시간, 연구 보고, 세미나 참석,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, 월별 연구 실적보고서 제출, 수업 TA 등)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제3조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보안 및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[전일제 신분 유지 원칙] ‘을’은 학위 과정 중 전일제(Full-time)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의로 비전일제(Part-time)으로 전환할 수 없다.
- ④ [비전일제 전환 예외 절차] 부득이한 사유로 비전일제 전환이 필요한 경우 ‘을’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후 학과회의의 최종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.
- ⑤ [졸업 트랙 의무] 석사과정생인 ‘을’은 졸업 이수 트랙(논문/프로젝트) 중 반드시 논문 트랙을 선택하여야 하며, ‘프로젝트 트랙’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- ⑥ [신분 변동 시 의무 유지] 협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‘을’이 취업, 휴학, 수료 후 비전일제 전환 등으로 인해 전일제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, ‘을’은 반드시 ‘학위 청구 논문’을 작성하여 졸업하여야 한다.
- ⑦ [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, 사후 관리 및 조사 협조] ‘을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학생인건비 수혜자로서, 졸업 후 진로 현황(취업·창업·진학 등)에 대하여 ‘갑’ 또는 관계 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연구재단, 산학협력단 등)이 실시하는 추적 조사 및 통계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조(연구 데이터 보안 및 관리)

- ① [데이터 관리 및 소유] ‘을’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연구 데이터(실험 결과, 소스 코드, 분석 자료 등)를 체계적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학원 또는 ‘갑’에게 귀속됨을 인정한다.
- ② [보안 유지 의무] ‘을’은 연구 수행 중 취득한 기술 정보, 미공개 연구 성과 및 사업 관련 기밀 사항을 ‘갑’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③ [연구 윤리 준수] ‘을’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위조, 변조,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, 대학의 연구 윤리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[데이터 이관] ‘을’은 졸업, 수료, 취업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구실에 대한 소속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재학 중 생산한 모든 연구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‘갑’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기록물로 정리하여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생인건비 지급)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, ‘을’에게 다음과 같이 학생인건비를 지급한다.(세전 금액 기준)
 - 석사과정: 매월 1,000,000원 이내(최대 4학기까지 지급, 5학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함)
 - 박사과정: 매월 1,500,000원 이내(1~4학기까지 지급)
매월 1,300,000원 이내(수료 후 5~8학기까지 지급, 9학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함)
 - 석박사통합과정: 이수 학기(24학점 이상 이수 시 박사과정)에 따라 석사,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지급
- ② 지급 가능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하되, 학생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매월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(학생인건비 지급 중단 및 조정)

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사전 통보 후 학생인건비 지급을 감액, 중단, 환수 등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① 연구 및 학업 소홀: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, 연구실 출근 및 실적 보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
- ② 성과 미달: 지도교수와 합의된 연구 목표(논문 투고, 연구 진행 등)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
- ③ 신분 변동: 휴학, 취업, 석사과정 수료 등 전일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

- ④ 징계 및 윤리 위반: 연구 부정행위, 연구실 내 질서 문란, 대학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- ⑤ 예산 사정: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종료, 중단 또는 예산 삭감 등 불가피한 재정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6조(상호 협의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내부 규정에 따르며,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2026. 3. 3.

학위과정:

학번:

성명: (인)

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장 귀하